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워렌 크리스토퍼

(외무부장관) (국무장관)

3) 제3차 협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서명 : 1995. 11. 24

발효 : 1996. 1.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둔군지위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확인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주한 미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1991년 1월 25일 서명되어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1993년 11월 23일 개정하여 1995년 12월 31일 만료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유념하여, 주한 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 미군

주둔에 관련된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제2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중 한국의 비용분담은 전년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10%씩 증액될 것이다. 1996년도 분담금은 3.3억미불, 1997년도 분담금은 3.63억미불, 1998년도 분담금은 3.99억미불이 될 것이다.

1996년도 분담금의 3분의 2는 현금으로, 3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이다.

1998년도까지 분담금의 4분의 3은 현금으로, 4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이다.

현금지원은 미달러화로 지급되고 공동사업 지원분은 합의각서 최종 서명일의 시장환율을 기초로 정산될 것이다. 매년도 현금분담은 2회 균등 분할 지급된다.

첫 번째 지급은 3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2번째 지급은 7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제3조

방위비 분담금은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방위비분담공동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출분야에 적절하게 배분한다.

제4조

양 당사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체제내에서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후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6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1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제임스 레이니

(외무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4) 제4차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서명 : 1998. 6. 19

발효 : 1998. 6. 19

(미측의 제안각서안)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1995특별협정의 전면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는 특별협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1998년도 방위비분담액의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동 서한 첨부물에 제시되어 있는 동 개정내용은 주한 미군이 작성하여 미국 무부와 미국방부의 승인을 얻은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 집행계획”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1998년도에 미화 7천 500만불과 한화 2천33억 2백만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화 4천만불에 달하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과 미화 6천만불에 달하는 군수지원사업을 포함한 현물지원을 제공할 것을 계속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불협정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구매력 면에서 1998년 대한민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3,99억불에 관한 특별협정상의 조항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것과 동등할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기지불된 세금과 미집행 잔액 260만불을 주한 미군에 보전하

며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특별협정에 따른 분담금의 여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세나 미집행으로 인하여 부족액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미합중국 정부는 “특별협정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현물지원의 일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보급품·장비 및 용역 일체는 대한민국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문안을 차기 특별협정에 삽입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특별협정이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공한 및 첨부물은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동의 회신 일자부터 발효할 것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획을 빌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대사관
서울, 1998년 6월 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대한 개정

제2조 첫째 단락의 셋째 문장의 “3,99억미불”을 삭제하고 대신 “1.75억미불과 2천33억2백만원”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제2조 셋째 단락의 첫째 문장중 “현금지원분은”의 다음(영문분은 첫 번째 문장의 말미)에 다음 구절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1998년은 제외하고”

제2조 셋째 단락의 첫째(영문본은 둘째) 문장의 말미에 다음을 추가하여 개정

한다. “다만, 1998년에는 예외적으로 항공기 및 지상장비, 합의각서에 의거한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탄약정비활동, 차량지원 및 공동사용기지의 전쟁예비물자장비정비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은 1미불당 907.6원의 환율로 정산한다.”

제2조 셋째 단락의 둘째(영문본은 셋째) 문장의 말미에 다음 추가하여 개정한다.

“다만, 1998년에는 2천33억2백만원으로 구성되는 현금부분은 예외로 한다.”

(우리나라 회답각서안)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현행 특별협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대사관의 98년 5월 29일자 외교공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동 협정의 개정 제안에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세나 미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의 분담액 부족분에 관하여 우리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행 협정하에 이같은 260만미불에 달하는 부족액을 추가적으로 군수지원의 제공을 통하여 보전할 것이며, 현행 특별협정하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여하한 부분에서도 부족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약속을 확인함을 귀 대사관에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 협정하의 현물지원의 일환으로 구매하는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 일체가 대한민국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안을, 국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차기 특별협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부는 귀 대사관의 전기 공한에 첨부된 1995 특별협정의 개정안이 본 공한의 일자에 발효하기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5) 제5차 협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서명 : 1999. 2. 25

발효 : 1999. 1.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둔군 지위협정”이라 한다) 제5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이 존속하는 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비용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요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 미군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제2조

이 협정의 존속기간은 3년이다. 1999년의 한국의 비용분담금은 1억4천1백20만 미불 및 2,575억원이다.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간에 대한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및 한국은행의 실질 국민총생산(원화기준)의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도 분담액을 조정함으로써 결정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지원으로 제공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2회 균등 금액으로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비는 2회 균등분할금으로 하여 사업 당해연도의 3월 1일 및 차년도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한다.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집행과 더불어 동시에 승인되는 별도의 이행지침에 따라 이행된다.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어떤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액은 비용분담 재

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그들 각자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이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함으로써, 1999년 1월 1일자로 유효하게 발효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4조

당사국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은 서면으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양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 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9년 2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7.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1)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교섭에 관한 한·미 공동 언론 발표문

외무부(1995. 11. 2)

1.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95. 7.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양측은 SOFA 재검토 협의를 진행시켜 왔다. 양측은 SOFA 개정작업이 한·미 안보동맹관계 강화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2. 공로명 외무장관과 제2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중인 페리 미국 방장관은 11. 2 (목) 오후 면담을 가진 기회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3. 공 장관과 페리 장관은 형사재판관할권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한·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 개최이후 2개월 이내에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에 추진되는 개정작업에서 양 장관은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SOFA선례와 부합하고 주한미군이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과 상응하는 수준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동시에 SOFA의 여타 문제들도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상기 2개의 별도 재검토 작업은 공히 1995. 11. 27에 시작되는 주에 개시될 예정이다.

2)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재검토 협의 결과

미주국 북미 2과(1995. 12. 2)

1.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재검토 회의가 11.30-12.1일간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한국정부의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미 본

국정부에서 파견된 미정부 관계관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금번 회의에서는 한국측이 제시한 개정안을 기초로 형사재판관할권 관련문제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양측간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양측은 SOFA 재검토 협의가 기본적으로 한·미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공동인식하에 교섭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아울러 양측은 협정 중 형사재판관할권 관련문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내주중 한국측 개정문안을 미측에 전달한 후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차기 회의는 12.14-15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 한·미 SOFA 개정 협의 제2차 회의 결과

1.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의 회의가 95. 12. 14-15일간 미국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 동 회의에서 양측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및 구금문제와 관련, 구체적 문안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가졌고, 형사재판관할권 관련, 여타 문제에 관하여도 깊이있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형사재판관할권 이외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한국측이 제시한 개정문안을 중심으로 협의하였다.
3. 금번 협의 회의에서 양측은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개선하는 가운데 현행 SOFA의 개정이 한·미 안보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4. 양측은 제3차 개정, 협의를 96. 1. 15(월)-16(화)간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4) 제4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의회 개최 결과

미주국 북미2과(1996. 2. 1)

1.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제4차 한·미간 협의회가 1.30-31일간 워싱턴(미 국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임성준 미주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 주미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에서는 Kurt Campbell 국방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측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한편 양측은 금번 협의에 앞서 3일간의 실무협의를 가졌다.

2.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그간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구금인도문제(Custody)에 관한 이견을 어느 정도 좁히는데 성공하였으며, 피의자의 구금인도 시기와 조건에 대한 이견을 보다 더 좁히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3.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구금인도 문제 이외의 형사재판관할권 관련문제와 기타 SOFA 문제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
4. 한·미 양측은 SOFA 개정 협의와 관련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를 1.31일까지 타결키로 한 바 있다. 양측은 금번 4차까지의 협의회에서 관련문제에 대한 협의를 완전히 종료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간 양측간 협의가 솔직하고 유익하였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안보동맹관계의 강화를 위하여 건설적인 자세로 SOFA 개정 협의를 계속키로 하였다.

5) SOFA 개정협상(8.2-3)에 대한 한·미 공동 발표문

1.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8.2-3간 서울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상에는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련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대표단과 Frederick C. Smith 미 국방부 아태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미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미군 관계관들로 구성된 미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한·미 양측은 양국 안보동맹의 중요성과 그러한 안보동맹을 유지함에 있어서 SOFA의 역할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SOFA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SOFA 개정이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SOFA 개정에 있어서 양측의 관심사가 적의 고려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였다.
3. 금번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SOFA의 조기개정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다.
4. 한·미 양측은 SOFA 개정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양측이 이미 상호 전달한 바 있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논의를 가졌다.
5. 한·미 양측은 기소시 신병인도 및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호 문제, 형사재판권 관련 여타 문제, 환경,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 동·식물 검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출입 제한, 민사소송절차 및 SOFA 대상자의 범위 문제 등 SOFA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6.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SOFA상 환경보호 관련규정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은 다음 협상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논의된 여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한.미 양측 대표단은 민사소송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및 대물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8. 다음 협상은 향후 2개월내에 조속한 일자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영 문]

Joint ROK-US Statement on the August 2 - August 3 SOFA Talks

1) Delegat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US) met August 2-3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in Seoul for talks to revise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e ROK delegation was led by Mr. Song Min-soon, Director General of the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MOFAT, and included representatives of the relevant Ministries. The US delegation was led by Mr. Frederick C. Smith,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Pacific Affairs, and included representatives of the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Defense, the US Embassy in Seoul and USFK.

2)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nd the role of the SOFA in maintaining that alliance, both sides have agreed to revise the SOFA as soon as possible. The two sides shared the view that revision of the SOFA will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long-term promotion of the alliance and that matters of concern to both sides will be appropriately taken into account.

3) The talks were constructive and productive, and provided the basic framework for the early revision of the ROK-US SOFA.

4) The two sides exchanged views on their respective positions on SOFA revision. They also reviewed and discussed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proposals which were exchanged earlier this year.

5) The two sides discussed issues related to the SOFA, including: custody transfer at the time of indictment and related assurances regarding legal rights; other issues related to criminal jurisdiction; environment; grant and return of areas and facilities; quarantine of animals and plants; working conditions for Korean employees of USFK; control of Korean nationals' access to USFK's Non-Appropriated Fund facilities; civil proceedings; and, the scope of persons accorded status under the SOFA.

6) The two sides agreed to transfer custody at the time of indictment with ensured legal rights of the accused. The Korean delegation proposed provisions in the SOFA on environmental protection. Both sides agreed to discuss this matter fully at the next round of talks. They also agreed to further deliberation on all other issues discussed in this round of talks.

7) The two delegations explored ways to establish a new civil proceedings provision and ways not to report traffic accidents resulting in property damage as criminal violations.

8) Both sides agreed to hold the next round of talks in the US as soon as possible within the next two months.

8. 군수분야 방위비 분담에 관한 시행합의서

제1조 - 근거

본 시행합의서는 1999년 2월 25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특별협정" 이라고 한다.)에 근거한다.

제2조 - 목적

본 시행합의서는 목적은 군수분야 방위비 분담사업 진행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이하 "양 당사자" 라고 한다.)간의 책임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군수분야 방위비 분담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설명은 본 시행 합의서의 별지1로 첨부된다. 별지 1은 상호 서면합의서에 의거 개정될 수 있다.

제3조 - 양 당사자가 상호 책임

1. 양 당사자는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이 주한 미군의 공식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매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2. 대한민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에게 방위분담금 사업의 종류와 범위내에서 주한미군사령부 필요로 하는 것을 입찰 공고하고 협상하며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대한민국 국방부가 대한민국 자금사용을 인가하는 서명을 대한민국에 제출할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에게 지정 담당자를 통하여 인도차시서를 발행하고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검사 및 인수하며 계약상 계약업체에게 지불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권한을 위임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을 제안할 권한과 미합중국 자금 또한 미합중국 자금이나 미합중국 정부 지급물자가 사용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사령부는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서명할 권한을 보유한다.
3. 양 당사자는 모든 계약업체가 인증을 위해 지불 청구서를 주한 미군사령부에게 직접 제출하고, 주한미군사령부는 비용지불을 위해 인증된 지불청구서를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조달국에게 제출할 것과, 대한민국 국방부 조달본부가 대한민국 계약업체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할 것을 합의한다.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비용지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또

한 양 당사자는 1999년도 군수분야 방위비부담 사업부터 지불청구서상에는 대한민국 세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4. 양 당사자는 모든 군수분야 방위비용문담을 사업이 대한민국 또는 그 인근 해역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 자금으로 획득한 모든 장비 및 보급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모든 용역은 대한민국 용역업체, 철도청 또는 한국군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대한민국 계약업체로부터 차량을 직접 인도받을 것이며, 이때 계약업체는 주한미군사령부에 인도되는 차량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
5. 본 시행합의서의 규정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부측 집행담당관은 주한미군 사령부에 인도되는 차량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
6. 본 시행합의서 규정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측 집행담당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측 집행담당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조달국장이다.

제4조 - 주한미군사령부의 특정 책임사항

주한미군사령부의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계약업체와 협상 완료후 계약서 초안에 서명한다. 서명은 주한 미군사령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계약체결을 추천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영문본 계약서 초안 5부를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2. 주한미군사령부는 특별조항에 나타난 요구사항과 계약상의 해석에 관한 모든 분쟁과 배상청구와 제소사항 등을 해결한 후 지불청구서 영문본 3부를 인증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계약업체로부터 만족할 만한 지불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인증된 지불청구서를 제출한다.
3. 주한미군사령부가 분기중 처리하여 대한민국 국방부로 발송한 모든 지불청구서의 분기별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에게 제공한다.
4. 한국산 보급품이 계약규격을 충족할 때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금으로 집행되는 정비계약 업무에 한국산 보급품을 최대한 활용한다.
5. 모든 작업이 각 연도의 10월 1일 이전에 착수되어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연도 계약하에 착수된 작업으로써 12월 31일 까지 완료 또는 지불 청구되지 못하고 12월 31일 이후에 지불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 내용을 11월 30일 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에 서면 통보한다. 서면 통보내용은 비용견적 및 완료시기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와 같은 견적에 대한 수정 사항을 대한민국 국방부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6.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은 후 30일 이내 처리하지 못하고 기간연장을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상호 합의하지 못할 때 군수분야 방위비용부담 계약서에 서명한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 문제가 있다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게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제8조 의견 불일치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약서 초안에 서명하지 않는다.

7. 각 사업별로 부록 2에서 배정된 금액 초과하는 비용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부담한다.

제5조 - 대한민국 국방부의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제출 받은 계약서 초안에 서명하며 최종 체결된 계약서를 주한미군사령부에 제공한다.

2.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인증된 지불 청구서가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조달국 제출된 후에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 조달국에 제출된 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정한 비용지불 담당기관에게 지불을 청구서 제출한다.

3.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인증된 지불 청구서를 받은 후 15일 내에 또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계약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별지 2에서 사업별로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어떤 별도의 합의각서나 양해지서에 포함된 내용에 모순되거나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모든 지불 증빙서 및 사용 예산에 대한 분기별 현황 요약목록과 대한민국 계약업체 지불된 지불 증빙서류의 사본을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에 제공한다.

5.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착수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작업 완료 시 까지 그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이는 계약업체가 계약의 수행중에 제기하는 모든 보상요구의 해결을 포함한다. 그러나 지불되는 비용은 해당 연도를 위하여 합의된 군수분야 방위부담 분담사업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6. 계약업체와 체결하는 비용 지불 절차 수립에 관한 서면합의서 또는 양해서에 상기 제5조, 3항 및 5항에 제시된 비용지불 규정을 포함시킨다.

7.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기간연장이 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모든 비용분담 계약서 초안을 접수한 뒤 30일 이내 처리한다.

8.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로부터 지불증빙서 받는 즉시 대한민국 공군에게 매그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한민국 육군에게 살스케이 비용을 지불한다.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로부터 지불, 청구서를 받는 즉시 대한민국 철도청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9. 계약은 하였으나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납품될 수 없다고 제4조 5항에 의거 미측이 통보한 보급품과 용역에 대하여는 자금을 다음해로 이월시킨다.

제6조 - 자금배정

자금배정은 매년 본 시행합의서의 별지2-엑스엑스-와이에 명기되며, 여기서 엑스엑스는 연도의 마지막 두자리이고 와이는 1로 시작되는 해당년도 내의 일련번호이다. 때때로 집행담당관들은 해당연도의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금 총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황에 따라 사업간 자금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자금배정에 대한 조정은 시행합의서에 추가적인 별지로 첨부된다. 살스케이와 기타 군수분야 방위비용부담 사업간의 자금 재배정으로 인하여 미화에서 원화로 또는 원화에서 미화로 전환이 필요시, 해당연도에 최초 체결되는 시행합의서 별지 2의 최종 서명일자에 한국은행이 고시한 기본 환율을 적용한다.

제7조 - 손해배상

주한미군사령부에게 군수분야 비용분담사업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서에 따라 발생하는 대한민국 계약업체의 지불청구서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사업별로 할당된 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지불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불의무가 없음.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지불할 경우 대한민국 국방부는 해당 연도에게 지불 금액 전체를 상환한다.

제8조 - 의견 불일치

본 시행합의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 사항은 양 당사자의 집행담당관에게 회부하여 해결한다. 해결은 가능한 한 협상에 의하여, 해결을 위하여 국제재판소나 제3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한다. 집행담당관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의견 불일치 사항은 해결을 위하여 주둔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 - 언어

본 시행합의서는 한국어 2부 및 영어 2부 총 4부가 작성되며 양개 국어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 개정

본 시행합의서는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개정 요청은 최소한 개정 요망일 60일전까지 요청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즉시 협상에 착수한다.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작성

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보 합의서에 첨부된다.

제11조 - 유효기간

본 시행합의서는 제1조에 명시된 특별협정 및 비용분담 합의서의 유효기간 동안 또는 상호합의에 의거 종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양 당사자 중 어느측도 상대방에게 90일 전에 사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연말에 시행합의서에 의하여 이미 착수되고 진행중인 사업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2조 - 효력발생

본 시행합의서는 아래의 최종 사명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시행합의서 이전에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모든 군수분야 방위비용부담 합의서를 대체한다.

별지1 : 군수분야 방위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

본 시행합의서 제2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본 문서는 군수분야 방위비용부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시행합의서의 별지로서 작성된다.

1. 한·미 단일 탄약군수 지원체제(살스케이) : 1992년 10월 15일 체결된 대한민국내 단일탄약보급체제(살스케이)보상요율에 관한 양해각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탄약의 저장/경비/처리 및 수송을 포함하는 용역이며 여기에는 항만에서 수령 및 적송을 포함한다.
2. 미공군 증원군용 저장탄 한·미공동관리 양해각서(매그넬) : 1996년 4월 19일 체결된 대한민국 공군 저장시설내 주한미군 탄약저장에 관한 대한민국 공군 및 미합중국 공군의 양해각서(매그넬) 또는 이를 대신하는 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 공군소유 시설 내에 저장된 미공군 탄약의 저장 및 정비를 포함하는 용역
3. 보수 및 정비업무 : 대한민국내에 배치된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와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간의 특정 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작전계획 5027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
4. 전쟁예비물자(더블유알엠) 정비: 청주, 김해, 광주, 수원, 대구, 오산 및 군산 공군기지내에 저장되어있는 항공기/연료탱크, 폭탄 탑재장치, 탑재보조기구, 다기능 탑재장치, 항공기 지상장비, 차량, 공군기지 설비 예비물자, 부대유지 기본물

자, 취상장비와 식기류 및 의료장비를 포함하는 장비의 정비.

5. 장거리 수송 : 철도청 및 대한민국 수송업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화물 및 승객의 수송으로써 대한민국 영토내에 국한된 수송용역
6. 차량, 장비 및 물자구입 : 주한미군이 사용할 대한민국산 차량(비전술차량 및 철도차량)과 장비와 물자(예 : 중장비 및 차량을 위한 수리부속, 탄약 갈판 및 정비 공구, 차량의 정비 공구, 차량의 정비와 수리를 위한 장비 및 공구, 영현 업무용 장비 및 물자, 이동식 건축구조물, 전쟁 예비물자의 수리 및 교체용 부품 등)의 구입
7. 한국중단 송유관을 통한 미측 유류의 터미널 시설 사용 및 저장업무에 대한 연간 비용.

[2000년도 군수분야 방위비 배정]

본 문서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간의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시행협정 제6조에 명기된 2000년도 연간 별지이다. 2000년도 군수분야 방위비의 총 지출은 다음 2개 분야로 배정한다.

- 가. 한미 단일탄약군수체제(SALS-K)에 19.0백만불을 배정한다.
- 나. 다음 분야에 54,7174십억원을 배분한다. 즉, 항공기 및 지상장비 정비, 철도차량 정비, 매그넬, 전쟁예비물자(WRM)정비, 장거리 수송용역, 비전술 차량 및 철도차량구입, 한국중단 송유관(TKP)용역, 그리고 장비 및 물자 구입.

사	업	금 액 (십억원)
주한미해군	항공기 정비	2.8512
7공군	항공기 정비	10.6910
	지상장비 정비	8.0000
	철도차량 정비	2.2186
	매그넬	4.5230
	전쟁예비물자정비	9.3312
	장거리 수송(철도 및 육로)	5.5713
	비전술차량구입	7.2311
	한국중단 송유관 후속 대량유류 지원	0
	장비 및 물자 구입	4.3000
총 계		54.7174

9. 고 조중필씨 어머니 호소문

억울하게 살해당한 중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지난 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버거킹 햄버거가게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목숨을 잃은 고 조중필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 중필이의 억울한 죽음과 믿어지지 않는 형사 재판 과정을 알리고자 이렇게 한 맺힌 심정을 눈물을 흘리면서 올립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범인인데도 검찰과 법원은 살인범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가슴이 맵습니다. 때론 자식을 따라 저 머나먼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10여군데 칼로 무참히 찢려 살해당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중필이를 생각할 때 아직도 이 엄마의 가슴에는 한이 맺히고 매일 밤마다 중필이가 그립습니다. 중필이가 살아있어 학교를 마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올 것만 같은 생각입니다.

중필이의 시신은 싸늘한 한 줌 재가 되어 떠나갔지만 아직 이 엄마의 가슴속에서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중필이를 이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부디 중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재미 삼아 사람 목숨을 파리목숨보다 하찮게 여기고 그 고귀한 젊은 생명을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범인은 둘 중에 한명이라고 하는데 법원 판결에서는 범인이 없습니다.

한 명은 미군속의 아들 아더 J 패터슨 또 한 명은 재미교포 애드워드 건리입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은 범인들은 재미 삼아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들의 말입니다.

우리 중필이는 칼로 잔인하게 아홉 군데나 찢려서 비명만마디 못하고 죽었

습니다.

더더욱 분한 것은 재미 삼아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살인마들 중 한 명은 1년 4개월의 복역 중 8.15 특사로 풀려났고 다른 한 명은 1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 아들을 죽이고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우리 중필이는 혼자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자식 죽은 것도 너무도 억울한데 형사재판마저도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들을 무죄로 8.15 특사로 모두 풀어준다면 이 나라의 법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필이는 97년 4월 3일 평소 사귀어오던 정은이라는 여자 친구와 국기원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를 하고 정은이의 집인 용산구 이태원동에 함께 가던 중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햄버거 가게에 들러 정은이는 음료를 주문하러 가고 중필이는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입구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국계 미국인인 패터슨 (17세)과 재미 교포인 애드워드 리 (18세), 두 소년들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던 중필이의 목과 가슴을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칼로 아홉차례나 찢러 동맥과 정맥이 절단이 되어 온몸의 피가 화장실 바닥과 천장 등에 쏟아지면서 차디찬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 살인범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죄를 떠넘기기만 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 두 사람을 앞에 두고 너희들 중 한 명이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인 사실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자 두 사람은 우리 둘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증언을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증인들의 조사 내용을 보면 그저 '재미삼아 사람을 칼로 찢렸다' 라고 증언을 할 정도로 사람의 목숨을 그저 자신들의 유희의 대상으로 빼앗는 흉악범임에도 미국인인 패터슨은 증거인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98년 8.15 특사로 석방이 되었고 재미 교포인 애드워드 건 리는 지방 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고등 법원에서 당시 미성년자란 이유로 20년으로 감형이 되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98년 9월 30일 고등 법원에서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재미 삼아 사람을 죽인 살인범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안준다면 요즘 같이 험악한 이때에 범죄가 얼마나 많이 양산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살인죄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재미 삼아 사람을 죽인 자들은 다 풀려나고 우리 중필이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요즘 대전 법정 비리사건, 의정부 비리사건 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도 이런 일로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나라 법원이 살인범을 가려내지 못하고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가족은 97년 4월 3일 중필이의 죽음 이후로 삶이 멈추었습니다.

딸 셋 낳고 어렵사리 늦게 3대 독자 중필이를 두었습니다.

애지중지 곱게 키운 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중필이는 이렇게 진실도 규명되지 못한 채 한 줌의 재가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아들에게 제 인생의 모두를 다 걸며 살아왔습니다.

중필이는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싸움 한번 안하고 욕 한번 안한 착한 애였습니다.

자식 사랑하면 팔불출이라 했지요.

하지만 저보다도 주위 사람들 이 더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우등생이고 모범생이었습니다.

또한 선행상도 많이 탔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는 유망한 아들이라 집안 식구고 친지들도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무엇이든 큰 사람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 말씀, 누나들 말도 잘 듣고 집안의 굳은 일을 다 맡아해 온 중필이를 잃고 살아가는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암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때면 대문을 열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며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을 땐 차라리 나도 따라죽고 싶은 심정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단란한 가정을 파괴시킨 범인들을 석방시킨 판, 검사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만약 판사, 검사 아들이 우리 중필이 같은 죽음을 당했다면 그 살인자를 석방을 시키겠습니까.

옛말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 다고 했습니다.

병을 앓다가 자기 명에 죽어도 부모가슴에 못질을 하는데 착하다 착한 우리 중필이가 마약이나 하고 쓸모도 없는 인간 쓰레기들한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식들 착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며 고생을 낙으로 삼고

중필이를 중심으로 평범하고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처음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독서실에 공부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중필이가 칼에 찔려 죽었다기에 그 애는 싸움도 안 하는데 왜 누가 죽였는가 하며 되물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있습니까? 중필이는 이렇게 싸늘한 시신이 되었는데 범인들은 서로 죄를 미루고 뉘우침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처벌도 않고 석방시킨 사법부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로서는 원통하지만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고 힘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지 말고 힘없어도 이 나라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디 법의 보호를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의아들을 잃고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는 불쌍한 자식 잃은 어미의 분통한 마음을 풀어 주십시오.

이대로 눈을 감고 싶지만 이대로는 절대 중필이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필이 살해사건이 끝까지 규명되지 않는다면 중필이를 따라 저 먼 하늘나라로 떠나는 것이 이승에서의 고통을 참기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은 중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둘 중 하나인 범인을 가려내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2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엄마는 단 하루도 편히 잠자지 못했습니다. 중필이를 해산을 할 때 그 고통보다도 지금 죽음이 규명되지 못하여 중필이가 편히 눈감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엄마는 단 하루로 편히 지낼 수 없는 괴로운 심정입니다.

부디 중필이가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진실규명을 위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 없는 저희가정은 이제 삶의 절망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식을 한 줌 재로 산에 뿌리면서 울어야 했던 이 엄마의 심정을 부디 헤아려 주시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눈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1999년 12월 25일

故 조중필의 엄마 이복수 올림

10. 각 조항별 개정안

1)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협정 제22조/ 제15조 8항/ 제31조)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법)

<개정 요지>

1. 인적적용범위의 축소 (제22조 1항 가/ 제22조 3항 가)
2. 한국형사관할권 제약요소 삭제 (제22조 3항 다)
3. 체포시 양국의 지위 평등화 (제22조 5항 나)
4. 피의자 신병인도시기 - 공소제기후 가능케 (제22조 5항 다)
5. 한국판결집행간섭배제 (제22조 7항 2문)
6. 미국당국의 대표의 입회없이도 미군피의자의 예비수사, 수사 또는 재판집행을 가능케 (제22조 9항 사)
7. 적대행위 및 계엄령선포시 한국형사관할권 즉시 정지를 시정 (제22조 11항)
8. 초청계약자는 형사관할권의 인적적용범위에서 배제 (제15조 8항)
9. 국외범 불처벌 조항 폐지 (제22조 제1항 나 합의의사록)
10. 검찰의 상소권제약 폐지 (제22조 9항 합의의사록)
11. 미군피의자 재판거부권 조항 폐지 (제22조 9항 카)
12. 공무의 최종 판단은 한국법원으로 개정 (개정 양해사항 제22조 3항 가-3-가)
13. 상기 개정안 내용과 모순되는 양해사항은 삭제하고, 여타부문은 합의의사록으로 수렴한다.

(1) (가) 본협정 제22조

조항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22조 제1항 (가)	합중국 군당국은 <u>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u> 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당국은 <u>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u> 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이하 현행대로)	1) 인적 적용범위의 헛점 방지, 평화시 민간인인 군속 및 가족에 대한 합중국의 재판권 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2) 사례 : NATO협정 제7조(1a) 미일협정 제16조(1a) 미.필리핀기지협정 제13조1항(나)
제22조 제3항 (가)	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u>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u> 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 <u>합중국 군대의 구성원</u> 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평화시도 군속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해 한국의 재판권행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삭제한다.
제22조 제3항 (다)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삭제]	1) 특별히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함은 효율적인 범죄진압을 제약한다. 2) 미일협정, NATO협정에는 '특별히 중요한'과 같은 유사 규정이 없다.
제22조 제5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해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u>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고해야 한다.</u>	[대체] 1) 미군당국이 전속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통보함으로써 상호 평등한 지위 회복 한국내에서 미군당국이 행사하는 재판권의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와 권한이 있다. 2) 나토미일협정에는 없다.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22조 제 5항 (다)	1문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 - - - - - - - - -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의해 공소가 제기될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 당국이 그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단서조항 추가] 1) 한국 수사당국과 법원이 피의자의 자유로운 조사, 접견이 보장되지 않아 그 수사 및 증거수집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준다. 2) 입법례:나토협정 제7조 5항, 미일협정 17조 5항
	2문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삭 제]	미군당국의 신병구금시기를 공소제기로 본다면, 이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협정본문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미군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3문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언제든지 대한민국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신병인도에서 미군당국의 주도적 재판권을 주는 조항이므로 불평등 조항이다
	5문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협정본문으로서 부적절하다. 합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6문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합중국 군당국이 범인의 신병을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22조 제 7항 (나)	2문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인도를 합중국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한국법원의 판결 집행을 간섭.
	3문 이와 같은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 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을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시설 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삭 제]	논리상 삭제가 당연, 한국의 행형시설 불신
	4문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과의 구금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삭 제]	해석상 삭제
제22조 제 9항 (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삭 제]	변호인도 아닌 단순한 미국관리의 입회가 없는 한 미군에 대한 예비수사, 수사 또는 재판진행이 전혀 불가능하다.
제22조 제 11항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협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당국은 형사재판권행사에 관하여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1) 적대행위의 개념의 추상성과 본협정의 형사재판권의 즉시 정지는 남용우려가 있다. 2) 미.일협정17조11항, 나토협정15조2항은 60일 전 사전통고 및 즉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제22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일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형사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삭 제]	1) 인적 적용범위의 헛점 방지. 2) 1960년 1.12 Cover 사건에 대한 미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추후 미국입법조치가 있을 때까지 한국 재판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다.
제1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당국은 계엄령이 해제 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삭 제]	남용우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적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삭 제]	한국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과 저촉된다. 한국의 주권 제약 이는 한국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및 간섭

- 608 -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9항에 관하여	(라) 협의반은 범죄는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판결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삭 제]	1) 이는 검찰 상소권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 나토. 미일협정에는 유사규정이 없다.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삭 제]	이는 한국법원의 재판에 대한 거부권을 미군 피의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반하며, 내국인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1) 이는 검찰 상소권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 나토. 미일협정에는 유사규정이 없다.

(다) 제22조에 대한 개정 양해사항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 (가) '합의수정되지 않는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 증명서에 대해서도 토의, 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해서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공무증명서의 최종 판단은 한국법원이 한다.'	1) 공무증명서 발급은 미군당국이 하고 이이제기시 최종판단은 한국법원이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2) 유사사례 : 미일협정

* 상기 개정안 내용에 모순되는 양해사항은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합의의사록으로 수렴한다.

(2) 본협정 제15조 8항 / 제31조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15조 제8항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나),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바에 따라 전기의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삭 제]	초청계약자까지 체포, 체포, 구금, 복역 등에서 한국의 형사관할권을 제한하면서 특권면제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제31조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u>영어본에 따른다.</u> ’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한 정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u>외부의 재판기관에 의하지 않고, 계약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u>	1) 한국의 주권국가로서 위신추락, 불평등하다. 2) 나토협정 16조

2) [청구권]조항 개정안(협정 제23조)

장 주 영 (변호사)

<개정 요지>

- 한미행정협정에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미합중국만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그 손해액의 25%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 책임이 없는 손해에 대해서 25%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손해발생에 대해서 미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미합중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미군이나 고용원이 공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대한민국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미군당국에서 배상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가 미군당국에서 제시한 손해배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가해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가해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가해미군에게 법원서류를 송달하고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 등 자세한 소송절차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미군을 상대로 사실상 재판할 수 없어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 가해미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 즉 서류송달, 법정출석, 강제집행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민사소송절차는 미군이나 고용원과 일반 거래관계에서 채권채무관계를 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규정이다.
- 그밖에도 빈발하고 있는 미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급과 손해배상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군차량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

(1) (가) 본협정 제23조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23조 제 1항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현행대로) - - - - - - - - - - 단, 각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 추가] 서독보충협정(1959년)참조
제23조 제 2항 (바)	각 당사국은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천사백 합중국 불(\$ 1,400) 또는 대한민국 통화로 이에 해당되는 액수(청구가 제기된 때에 제18조의 합의사록에 규정된 환율에 의한다.)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삭 제]	
제23조 제 5항 (마)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 「퍼센트」를, 합중국이 그의 75 「퍼센트」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군대나 합중국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분담한다.	(1) 각 당사국의 일방만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재정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2) (현행대로) - - - - - - - - - - 제2항에 의한 중재인이 결정한 책임비율에 따라 양당사국이 분담한다.(이하 현행대로) - - - - -	[(1)항 대체]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23조 제 6항 (나)	그 보고서는 합중국관계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없이 보상금지급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 - - - - - - - - - 합중국당국은 보고서를 송부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지급의 (이하 현행대로)	
제23조 제 7항	합중국 군대 차량의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 제6항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중국 정부는 제3자의 손해에 대비하여 공용차량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나) 기존 내용을 (나)항으로 한다.	[(가)항 신설] 서독보충협정(1959년), 미-호주협정(1963년) 참조
제23조 제 9항 (다)	대한민국당국과 합중국당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다) - - - - - - 청구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사실조사 및 증거의 수집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나) 제23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신 설		(가) 대한민국법원이나 또는 기타 당국에서 비행사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소장 또는 기타 서류와 법원명령을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중국 이 설치하거나 지명한 연락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나) 대한민국법원 또는 당국이 송달을 의뢰한 서류는 위 연락기관이 지체없이 수령하여야 한다. 송 달은 위 서류가 연락기관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달이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뜻의 통고는 지체없이 대한민국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행해야 한다. (다) 연락기관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대하 여 (나)항에 따라 그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고나 송달이 불가능하였음을 알리는 서면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나 당국은 연락기관이 서류를 재접수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송 달은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통고를 첨부하여 송달의뢰서류의 사본을 재발송한다. 7 일간의 기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9항에 관하 여’ 서류 송 달절차 관련 조항 신설]
신 설		(가) 각국의 군당국은 대한민국법원 및 기타 당국이 행한 비행사재판에서 선고 혹은 결정된 판결, 결정, 명령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게 지불되는 급여 기타 지불금은 대한민국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서 압류, 가압류 기타 대한민국법원이나 당국에 의하여 취해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합중 국당국은 대한민국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채무자에 대한 지불금에서 공제하여 집행기관에 예치한다. (다) 대한민국법원이나 기타 당국의 비행사재판에 의한 판결, 결정, 명령이 합중국군대의 시설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군대대표의 입회하여 대한민국집달관이 이를 행한다.	[‘9항에 관하 여’ 판결등의 비행절차관련 조항 신설]
신 설		(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이 대한민국법정이나 기타 당국에 출두되도록 소환될 때에는 합중국군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출두를 보장하여야 한다. 연락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환의 집행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규정은 합중국당국이 그 가족의 출두를 보장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하여 준용한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족은 대한민국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한다.	[‘9항에 관하 여’ 법정등의 출석 관련조 항신설]

3) [시설 기지] 조항 개정안(협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임 재 홍(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개정 요지>

미군주둔으로 인한 문제점은 미군범죄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비가시적이나 구조화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어져야 하고 한미행협 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시설과 기지에 관한 TKDYDANS제이다.

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행협 제2조부터 제5조는 기지와 시설을 규정하는 기본 조항들이다. 위 조항들은 규정 자체부터가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아 국가 주권성이 의심스러운 사대주의적 내용들도 내포하고 있다. 이 조항들의 문제점들을 유형화하여 보면, 시설·기지 결정, 토지사용료, 기지반환, 시설·기지에 관한 관리 권한, 기지반환상의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평등한 방향으로의 행협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행협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사용은 한미 양국간의 계약을 통해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지 및 시설의 계약에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일반에서 보듯 계약기간, 임대료, 계약의 재협상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주둔군의 활동범위 및 기지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현재의 미군주둔 시설 및 기지에 대해 기지사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2000년이전이라도 불필요한 시설 및 기지는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은 주군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관련 한국정부에 환경조사권이 신설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한미군과 관련된 정보가 한국정부에 제출되어야 하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에 대한 통제메카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기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협정 개정이 필수적이고 다음으로는 행협을 둘러싸고 있는 방위조약 및 합의의사록, 양해각서까지 포괄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가) 본협정 제2조 - 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2조 제1항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양국 정부가 체결한다.(이하 현행대로)	제2조 1항 (가)의 경우 기지사용료 계약을 5년마다 양국정부의 합의하에 체결하게 되면 합동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어진다.
제2조 제1항 (나)	본 협정의 효력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 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본 협정의 효력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 시설과 구역은 2000년까지 계약이 체결되거나 유보권을 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이하 현행대로)	제2조 1항(나)는 1966년이전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할뿐 아니라 사용의 필요성 여부에 판단권을 미합중국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양정부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의 미군기지에 대한 필요성 유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개정안과 같은 방식이 있다.
제2조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기지사용료를 지불한다. 이것은 양국 정기간 계약에 의한다. (나) 기지사용료계약은 5년마다 갱신한다. (다) 기지임대료에 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당해 기지에 관한 계약은 종지하는 것으로 본다.	[대 체] 기지사용에 관한 계약 및 사용료 지급은 시설과 구역과 관련 조항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제2조 제3항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건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삭 제]	계약에 의해 합의되는 만큼 제2조 3항은 불필요 해진다.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1항 (나)	1. 대한민국은 재사용권 유보하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에 대해 유보된 재사용권 포기를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합중국 군대에 요청할 수 있고, 합중국 군대는 그러한 시설과 구역이 가까운 장래에 재사용될 것으로 예견되지 않으면 이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1. 대한민국은 2000년까지 재사용권 유보하에 (이하 현행대로)	[합의의사록 제1항으로 변경]
제3항	1.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주둔군 지위협정 제2조에 공여된 모든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검토한다. 2.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어느 때든지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1.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목적으로 2000년까지 매년 1회(이하 현행대로) 2. (현행대로)	[각각 합의의사록 제2항과 제3항으로 변경] 개정안 제2조 제1항 (나)에 의하여 2000년까지 계약이 체결되거나 유보권을 보류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과 구역 중에서 필요없게된 시설과 구역의 재사용권 포기 및 사용중인 시설과 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한 경과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가) 본협정 제3조 - 시설과 구역(보안조치)

조항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3조 제1항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 모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미합중국 군대는 기지 및 시설내에서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른 환경보호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년에 1회 미군기지 및 시설에 대한 환경조사권을 갖는다. (다) 합중국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 보상의 의무가 있다.	[[나), (다)항 추가] 현행 제3조 1항은 한국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불평등하며 임의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보호 조항의 신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기지내 기지주변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정부의 환경조사권 신설이 필요하다.
제3조 제2항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서,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 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지정 통신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정부는, 관계 법령과 협정의 범위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장치, 또는 합중국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방지를 방지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현행대로 (나) 현행대로 (다) [삭제]	[[다)항 삭제]

조항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3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 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 군대의 경비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삭제]	비상시 작전권이 미군측에 있는 상황에서 제3조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신선		1. 합중국군대가 그의 제공된 설비내에서 훈련계획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이들 설비외에서 기동연습과 기타 훈련을 행할 수 있다. 본 권리의 행사는 기동연습 및 기타훈련에 관한 한국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단 본 조 제5항 내지 10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가) 합중국군대는 기동연습 및 기타훈련의 실시기간중에 가능한 한 피해를 방지하며 토지의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합중국군대는 기동연습 또는 기타훈련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토지를 3개월간 재사용할 수 없다. 단 한국당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군대가 실시하는 기동연습 또는 기타훈련으로 인하여 토지의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때에는 동군대는 이러한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토지의 경제성에 대하여 가일층의 피해나 새로운 근본적인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기간중 그러한 토지에서 기동연습이나 기타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삼가야 한다. (라) 한국당국이 본항 (나) 또는 (다)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근거로 특정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양국은 군당국의 요구에 따라 군의 훈련요건을 충족할 토지의 환지와 그 사용에 대해서 즉시 교섭을 행한다. 단 한국의 이해와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정한 고려를 행하여야 한다. 3. 군사상의 이유로 인하여 자연보유지 또는 자연공원과 그의 일부를 사용함이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체결된 협정에 따라 군대는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연보유지, 자연공원 및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4. 한국당국이 기동훈련과 기타의 연습을 위하여 군당국이 지정한 구역이외에 군당국의 요구를 충족할만한 대체구역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때에는 군당국은 동당국이 최초로 지정한 구역에서의 기동훈련과 기타의 연습을 연기하여야 한다.	

조항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신선		<p>5. (가) 합중국 군당국은 가능한 한 단기일내에 기동연습과 기타훈련에 대한 계획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해야 한다.</p> <p>(나) 기동연습과 기타훈련이 개시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증빙서류와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동연습 및 기타훈련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한국정부와 합중국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지정일자에 한국당국에 통고해야 한다. 한국당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동계획에 관하여 그들과 협의한다. 동계획에는 계획에 관한 실시일자, 종류, 기간 및 장소를 포함해야 하며 또는 공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차단여부와 한국법률에 의해 규정된 용도이외의 사용여부 및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취할 안전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기동연습과 기타훈련과 관련하여 항공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계획에 그 사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p> <p>(다) 한국정부와 과연국 합중국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기간 이외에 한국당국이 동계획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제기하지 않는한 군당국은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p> <p>(라) 한국당국이 동계획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제기하는 때에는 양국은 한국의 이익과 군사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공동토의를 통하여 합의하여야 한다.</p> <p>(마) 한국당국 및 군당국이 지방적 또는 국부적 부문에서 동계획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건은 한국당국과 합중국정부간에 이관, 토의를 계속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한다.</p> <p>(바) 한국정부와 합중국정부간에 동계획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합중국군대는 기동연습과 기타훈련을 실시하지 못한다.</p> <p>(사) 군대는 동계획에 관하여 도달한 합의에 따라 기동연습과 기타훈련을 실시한다.</p> <p>6. (가) 어느 계획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한국당국이 기동연습 또는 기타훈련이 개시되기 2주일 전에 동훈련을 공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군당국은 그드리 동훈련이 실시할 의향임을 한국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p> <p>(나) 합의를 위한 토의기간중에 예견할 수 없던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한국당국이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간에 특히 기동연습이나 기타훈련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또는 공공위생을 위협하거나 기상상태의 결과 상당한 파괴를 유발하리라는 근거로 전기 훈련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제기한 때에는 양국은 지체없이 이들 이유를 참작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합동토의를 통하여 노력한다.</p> <p>(다) 한국의 지방당국은 한국법률에 따라 재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한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그로 인하여 주둔군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군당국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p> <p>7. 본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민간인 및 군대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의하는 바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제3조 1항내지 7항으로 신설]

(3) (가) 본협정 제4조 -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조항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4조 제1항	합중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u>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u>	합중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 - - - - - - -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접수국이 주둔국의 기지 및 시설반환에 있어서 원상회복이나 피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이나 일본이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한국측 이해도 있지만 합중국의 이해도 결려있는 공통의 이익에 기초한 것인 만큼 패권국에 주둔하는 것 또는 접수국의 이해가 큰 경우와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제4조 제2항	대한민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현행대로)	
제4조 제3항	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4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1항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모든 이동 가능한 시설 및 구역과 구역의 건축, 확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 관련하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되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산으로 되며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 시킬 수 있다.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 -----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된 모든 비품, (이하 현행대로)	
제2항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시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삭 제]	

(4) (가) 본협정 제5조 -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5조 제1항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한국정부는 합중국의 기지 및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는다.	
제5조 제2항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군대 또는 군속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결과 한국정부가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에는 모든 적절한 요인을 참작하여 합중국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당국과 합중국군당국은 그때마다 교섭을 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나) 합중국 군대의 요구에 따라 제한지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즉각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금의 할당에 대한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	[대 체] 시설과 구역의 경비와 유지에 관한 제5조 제1항에 맞추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동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경비(제1조)를 떠맡게 되어 있어 제5조 1항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나) 제5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신 설		<p>(가) 본항 (가)내지 (라)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된 범위내에서 군사가 그 자체의 목적이나 또는 군속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나 용역에 대해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p> <p>(나) 군대 또는 군속은 공로, 고속도로 및 교량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p> <p>(다) 군대 또는 군속은 기상, 측지 및 통계지도업부는 물론 한국경찰, 공공위행 및 소방시설의 이용을 포함한 제반행정상의 용역과 원조를 적어도 한국군대와 동등한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다. 운항가능설로의 이용에 있어서는 같다.</p> <p>(라) 이미 체결되었거나 또는 장차 체결될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의 법적 소유하에 있는 것은 물론 장차 구입, 건축될 재산은 합중국 군인 또는 군속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본항의 규정은 철도청이나 체신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마) 본항 (가)내지 (라)에서 말한 재산의 사용료의 면제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p> <p>(1) 수선 및 유지비</p> <p>(2) 한국법률에 따라 한국정부가 사용료의 면제책임을 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현행 공공사용료</p> <p>(3) 기타 운영비</p>	<p>[제1항으로 신설] 행정협정 제5조 2항에서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미군당국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구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합의의사록에서 세밀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는 "독일연방공화국과 주둔중인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관한 보충협정" 제63조에서 볼 수 있다. 합의의사록 제5조 1항부터 3항은 이러한 경비부담의 예라고 할 수 있다.</p>
신 설		<p>(가) 군대 또는 군속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또는 이러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과전국은 철수구역에 대하여 과해진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p> <p>(나) 군대 또는 군속당국의 요구에 따라 설치, 개량, 보강 또는 확장된 교통 및 전기통신, 전기, 가스, 배수장치 및 시설로 인하여 한국이 혜택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들 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수선 및 정비에 소요된 비용은 한국의 이익과 합중국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배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의 폐쇄나 제거를 요구하거나 군대 또는 군속의 요구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설비 및 시설을 수선 및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p> <p>(다) 군대 또는 군당국의 요구에 의한 토지의 구입이나 또는 군대 또는 군당국의 이익을 위하여 군대 또는 군속이 수행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통 및 전기통신, 전기 가스 및 급수 또는 배수설비나 시설이 그 이상 공용에 제공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필요성을 상실하여 이들 설비 및 시설의 방향 또는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중국은 그에 관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p>[제2항으로 신설] 행정협정 제5조 2항을 보다 상세히 구분한 예임.</p>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신 설		<p>(가) 군대가 사용하는 군용 또는 기타 항공기가 군대의 배타적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지 아니한 민간항공을 포함한 모든 공항을 사용할 때에는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지불하는 정당한 사용료 이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지불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p> <p>(나) 군대가 사용중인 군용 또는 기타 항공기의 긴급착륙에 대해서는 착륙료를 면제한다.</p>	<p>[제3항으로 신설]</p>

(5)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에 대한 합의의사록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3항	비상시에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삭 제]	

(6) 본협정 제12조 -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보조 시설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12조 제 2항	합중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해에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보조 시설을 소요하는 바에 따라 시각형과 전자형 설치, 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운항보조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제에 대체로 합치되어야 한다. 운항보조시설을 설치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은 동 보조시설의 위치와 특징을 적절히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보조시설을 변경하거나 부가적인 운항보조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통고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보조 시설을 설치, 건립 및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운항보조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제에 대체로 합치되어야 한다. (이하 현행대로)	
신 설		(가) 미합중국정부는 군대배치, 군인력, 군수물자에 관한 정보를 매년말 1회에 걸쳐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 대량살상가능성있는 무기의 기지내 반입의 경우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제출의 의무와 무기반입시의 허가 조항 제12조의 2로 신설] 현재 협정에는 어느 부분에도 이와 같은 규제조항이 없다. 따라서 미합중국군대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보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고,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반입 등에 있어서는 한국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4) [노무]조항 개정안 (직접고용제를 채택하는 경우 : 협정 제17조)

한 이 봉 (변호사)

<개정 요지>

-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제외
- '군사적 필요'에 의한 고용원의 권리제한 조항 삭제
- 쟁의의 조정기간 명시, 냉각기간을 노동쟁의조정법과 일치시킴

(가) 본협정 제17조

조항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17조 제1항(가)	“고용주”라 함은, <u>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u>	“고용주”라 함은 <u>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하는 합중국 군대를 말한다.</u>	초청계약자는 사경제주체이므로 주권면제특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제17조 제1항(나)	“고용원”이라 함은, 고용주가 고용한 <u>군속이나 제15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고용원이 아닌 민간인을 말한다. 다만, (1)한국노동단(K.S.C.)의 구성원 및 (2)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개인이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u>	“고용원”이라 함은 고용주가 고용한 <u>군속이 아닌 민간인을 말한다. 다만,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이하 현행대로)</u>	한국노동단도 고용원에 포함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 제3항	본조의 규정과 <u>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u>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u>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u>	본조의 <u>규정에 배치되지</u>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u>노동법령의 제규정 및 대한민국의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u>	‘군사상 필요’ 삭제 법원 결정의 복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제17조 제4항(가)	(2) 그 쟁의가 전기(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2) 그 쟁의가 전기(1)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에 회부된 후 [15일]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이때 특별위원회에는 <u>최소한 1인이상의 고용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u>	[추가] 1) 미국·필리핀 협정에서도 합동위원회의 조정 및 교섭절차를 두고 있다. 2) 노동부에서의 조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3) 특별위원회에 대한 고용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5)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2)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u>70일</u> 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5) ----- ----- <u>15일</u> 의 기간 (이하 현행대로)	

(나) 제17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조항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2항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 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을 합중국정부가 국제법상의 동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u>합중국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이러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u>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동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부분 삭제] 1) 일미협정에서는 ‘시설과 구역안의 군기문란을 포함한 안전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2) 군사적 필요에 의한 해고여지를 없애고 국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항	고용주가 <u>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u> 때문에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 법령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주가 <u>본조에 따라 적용되는</u>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하 현행대로)	‘군사상 필요’라는 막연한 개념에 의한 노동법 적용 회피 여지를 없애야 한다.

(다) 제17조에 대한 개정 양해사항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 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1. 제3항에 사용된 "주한미군"은 제15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삭 제]	
	2. 제3항에 사용된 "따라야 한다"는 고용조건, 보수와 노사관계가 본조항 또는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의해서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삭 제]	
	3.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에 사용된 "군사상 필요"는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해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삭 제]	'군사상 필요'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4.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이의 합동위원회 회부가 비상사태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 반드시 회부하지 않아도 된다.	[삭 제]	
제 4항 (가)	1.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은 본항 하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의 정당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한다.	[삭 제]	
	2.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한민국 노동부의 적절한 관계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삭 제]	

(다) 제17조에 대한 개정 양해사항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 4항 (가) (2)	1. 조정노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문제 된 쟁의를 조사함에 있어서 고용주 대표를 포함하여 해당 쟁의를 알고 있는 인원과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다.	[삭 제]	
	2. (가)본항 하에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쟁의는 주로 단체행동 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는 개인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최종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 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노무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본 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1)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졌고, (2) 해당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며, 그리고, (3)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절한 행정절차의 거부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이러한 절차에 있어 고용원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 또는 개인대표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회부되는 개인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는 최종결정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사안은 제4항(가)(3)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추가검토를 위해 합동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특별위원회의 개인사안 검토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록과 고용원 또는 고용주에 의해 제출된 서면요록이나 구두논의에 한정된다. 특별위원회는 복직과 보수의 소급지급까지를 포함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명령할 전권을 가진다. (다)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와 주한미군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검토 중인 사안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자이어야 한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삭 제]	

5) [통관, 관세 등 특혜] 조항 개정안(협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최 승 환 (경희대 법대교수)

<개정 요지>

출입국, 통관, 관세 및 과세상의 특혜부여는 지나친 특혜부여와 특혜남용에 따른 '국민경제보호'와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 부당하거나 불평등한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하여야 한다.

우선 특혜의 인적범위를 타국의 주둔군지위협정처럼 대폭 축소하여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의 배우자나 그의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로 한정하도록 한다. 특혜부여 기준으로 원용되는 '합리적 기간', '합리적 양', '적절한 문서', '적절한 증명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신분증 위조로 인한 특혜남용과 각종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신분증 증명서 발급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출입국관리는 물론 국가안보상으로도 중요하므로 신분증 위조사범에 대한 한미 합동단속의 운용강화를 위한 절차적 규정을 신설한다. 특혜남용에 따른 국민경제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권면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각종 면세물품이 불법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상호협력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자격자의 불법이용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PX, 클럽, 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자격자의 불법이용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PX, 클럽, 골프장 등 각종 비세출자금기관의 이용 자격자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고, 한국당국이 그 수익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통고 받도록 하여 과세특혜를 남용한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관, 관세 및 과세상의 특혜부여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에 한해 최소한도로 부여하도록 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 (가) 본협정 제8조 - 출입국 (Entry and Exit)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 8조 제 2항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문 현행대로)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여권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여권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하 현행대로)	[추 가] 1)미-일협정 제9조 2항, 미-호주협정 제2조 5항, NATO협정 제3조 1항과 유사하다.(미-일협정과는 동일) 2)개정안으로 추가된 부분은 NATO협정 제3조 3항과, 미-호주협정 제2조 3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제 8조 제 4항	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 현행대로) 적절한 문서[여권, 신분증 및 기타 대한민국당국의 신분 확인에 충분한 사항이 기재된 합중국당국이 발행한 문서]를 (이하 현행대로)	[추 가] 1)미-일협정 제9조 4항, 미-호주협정 제2조 3항과 동일하다. NATO협정(제3조 3항)의 경우는 군속과 가족은 그들의 여권에 그 신분을 기입하도록 하고만 있다. 2)적절한 문서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한국의 출입국 관리 법령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제 8조 제 5항	본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중국당국은 대한민국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 현행대로) 이를 즉시 통고하여야 하며 - - - - - 퇴거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퇴거요청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대한민국 당국의 강제추방 또는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1)미-일협정 제9조 5항, 미-호주협정 제2조 6항, NATO협정 제3조 4항과 유사하다(미-일협정과는 동일). 2)NATO협정의 경우에는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파견국으로부터 해고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때에는 파견국당국이 즉시 그 사실을 접수국 당국에 통고하고 또한 요구되는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21일 이상 결근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3)미-호주협정의 경우에는 지위상실 후 30일 이내에 출국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위상실 후 30일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 호주에 체류중인 때에는 합중국당국이 즉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호주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21일 이상 결근한 자에 대한 통고의무는 NATO협정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제8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 3항	제3항의 종단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되 이를 대한민국당국에 인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삭 제]	해석상 필요 없다.
제 4항	제5항에 의거한 신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합중국 당국이 지는 제6항에 의한 책임은 제5항에 의거한 통고가 대한민국당국에 전달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추방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삭 제]	추방명령이 발해지지 않더라도 퇴거요청만으로 합중국당국이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이 군용비행장을 통하여 출입국할 경우, 합중국당국은 대한민국당국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당국은 필요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적절한 통제를 행할 수 있다.	[제3항으로 신설] 신설조항은 서독과의 보충협정 제5조 1항㉠와 같은 내용이다.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 9조 제 5항	세관감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나)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편 경로에 있는 제1종서○ (다)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	대한민국의 세관당국은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 가족에 탁송된 모든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합중국 당국의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한다. 다만 공용의 봉인이 있는 화물 및 공문서와 합중국의 군사 우편경로에 있는 공용우편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대 체] 1)미-일협정과 동일하다.(다만(가)항에서 "휴가명령이 아닌"이란 구절이 없고, (나)하이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합중국의 군사우편경로에 있는 공용우편물"로 대체된 점 외에는 동일하다. 2)미-호주협정(제11조 2항)의 경우 군사우편경로에 있는 우편물을 검열할 수 없으며, NATO협정(제11조 3항)의 경우 관인으로 봉인된 공문서는 세관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3)NATO협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따라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과 그 가족을 수색하고 그들의 화물 및 차량을 검사하며 또한 물품을 압수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
제 9조 제 8항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 동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군대는, 대한민국당국과 협력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군대, 동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세관당국은 면세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추 가] 1)미-일 협정 제11조 8항과 동일하다. 2) 개정안에 추가된 부분은 NATO 협정 제12조 1항을 참조하였다.

(다) 제9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 2항	제3항 (가)는, 화물의 선적과 소유자의 시행이 동시에 행하여져야 할 것을 요하거나 또는 ○○나 선적이 1회이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에는 합리적인 양의 가구, 개인용품과 가정용품을 관세의 부과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제3항 (가)는, ----- -----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이하 삭제)	[부분삭제] 미-일 협정 합의의사록 제11조 2항은 개정안과 같이 후반부가 없다.
제 3항	제5항 (다)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세관검사시 드러난 불법반입 및 수입이나 합리적 양을 초과한 물품의 반입 및 수입시에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당사자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중국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 제] 미-일 협정 합의의사록 제11조 3항의 경우 군사화물을 합중국 정부의 선하증권에 의해 합중국 군대로 향하여 선적되는 모든 화물로 정의하고 있다.
제 5항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남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 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 -----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정물품에 대한 합리적 양의 기준은 양국당국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추 가] 미-일 협정 합의의사록 제11조 5항과 동일함.
신 설		합중국당국은 면세물품의 불법유출 및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항으로 순번매겨 신설] 면세물품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위한 것이다.

(라) 제9조에 대한 개정 양해사항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 5항	1. 합중국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하여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대한민국 세관 검사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된다. 2.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주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구성원 개인,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서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합중국당국의 어떠한 예정된 검사도 입회할 수 있다. 특정화물에 금수품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양의 물품이 포함된 것이 심각히 의심된다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의 적절한 사전통보가 있으면 합중국당국은 예정되지 않은 검사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숙소에서 그리고 구성원 개인, 군속 또는 허가된 요원의 입회하에서 그러한 예정되지 않은 검사에 참관할 기회가 부여된다. 3.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주한미군의 공인된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한 화물에 대해서는 합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화물목록과 선적서류를 포함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관련 정보는 요청에 따라 합동위원회 또는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를 통해 제공된다.		[삭 제]
제 6항	합중국당국은 대한민국정부에 만족스럽고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관련법령에 합치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한민국당국과 협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언제라도 그 군대의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의 고용원과 이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덜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		[삭 제]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계자는 명령하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한 합중국 관계자의 검사에 입회자로 참석할 수 있다.		[삭 제]

(2) 본협정 제13조에 대한 합의의사록과 개정 양해사항 - 비세출자금기관 (Non-appropriated Fund Organizations)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합의의사록 제13조	합중국 군대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제 기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합중국정부의 기타 공무원 및 직원, (나) 합중국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군대 및 그 구성원,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그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계약 용역의 이행만을 위한 자, (라) 미적십자사 「유·에스·오」와 같은 주로 합중국 군대의 이익이나 용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관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마) 전 각호에 규정된 자의 가족 및 (바)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	(현행대로)	[제1항으로 순번만 매김] 미-일 협정 합의의사록 제15조는 “통상 해외에서 동일한 특권을 부여받는 합중국정부의 기타 관리 및 직원은 제15조 1항에서 말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양해사항 제13조	합중국당국은 비자격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한다. 관련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모든 한국 민간인 회원자격과 그 보고절차를 연2회 검토한다.	(현행대로)	[개정양해사항은 합의의사록 제2항으로 순번 매겨 변경한다.]
신 선		합중국 당국은 비자격자의 비세출자금 기관의 이용제한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제안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3항으로 순번매겨 신설] 비자격자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와 특혜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 선		합중국 당국은 비세출자금기관으로부터의 불법유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조사에 적절한 협조를 행한다.	[합의의사록 제4항으로 순번매겨 신설] 미-호주 협정 제10조 3항에서는 비세출자금기관에 부여된 특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주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나 세금이 면제된 물품을 구입하는데 관한 개인별 할당액을 엄격히 감시할 의무를 합중국 당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3) 본협정 제14조 - 과세 (Taxation)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제14조 제 1항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 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비세출자금기관이나 합중국 당국의 관리나 통제하에 있더라도 상업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세출자금기관의 운용에 대해서는 조세 또는 이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추 가] 1) 미-일 협정 제13조 1항과 동일하다. 2) 비세출자금기관이 특혜를 남용하여 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4) 본협정 제26조에 대한 합의의사록과 개정 양해사항 - 보건과 위생 (Health and Sanitation)

조항	현행	개정 (안)	검토의견 및 타국사례
개정 양해사항 제1항	미군당국은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항에서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현행대로)	[개정 양해사항을 합의의사록 제1항으로 명칭만 변경]
개정 양해사항 제2항	미군당국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또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된 주한 미군요원의 한국인 접촉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즉시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제공한다. 또한, 미군당국은 요원 중 후천성 면역결핍증 또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발병에 관한 분기별 통계정보를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계속 제공한다. 나아가 미군당국은 전염병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질병 발생 시 수시로 제18의무단 방역부대 참모 또는 적절한 후속부대와 직접 접촉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현행대로)	[개정 양해사항을 합의의사록 제2항으로 명칭만 변경]
신설		한국당국은 국내에 반입되는 주한미군을 식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규정보고와 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한다.	[합의의사록 제3항으로 순번매겨 신설]

[참고 문헌]

I. 판행본

1. 국립환경연구원, 『미군철수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1993. 12.
2. 노정희, “주한미군의 기지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1999.
3. 녹색연합,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전국미군기지 1차 환경조사 보고서』, 1996. 12. 4.
4. 이장희편저,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미군사관계의 재조명』, 아사연, 1998. 3.
5. 이장희 외 2명,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6. 황성수, 『한민행정협정연구』, 최신의학사, 1968.
7. 대한변호사협회,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결과보고서, 2000. 4. 17.
8. 정인섭, 『한국판례 국제법』, 홍문사, 1998.
9. 정희진,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한국기지촌 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아카데미, 1999.
10.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개마서원, 1999.
11.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1994. 10.
12.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 환경에 관한 각국 행정협정의 비교』, 공청회자료집, 1999. 5. 3.
13.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만났다』, 길 기획, 1996.
14.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공청회자료집, 1998. 7. 1.
15. 최승환·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일지(1987 - 1998년)”,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제2호, 1998.

II. 논문

1. 강명길, “미군시설 및 기지사용문제와 개선방향”,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 발표문, 외교안보연구원, 1995. 6. 21.
2. 강병규, “한미군사조약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6권 제1호, 1961. 3.
3. 김국진, “미국의 대한반도군사정책”, 『한국군사』, 창간호, 1995. 7.
4. 김명기, “국제법상 주한미군의 주둔근거와 지위에 관한 사적 고찰”, 『(명지대)사회과학논총』, 제10호, 1995. 12.
5. 김병렬, “SOFA 협정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36권 제1호, 1993. 6.
6. 김소희, “주한미군기지에 빼앗긴 삶과 환경을 되찾자”, 『환경운동』, 1996. 10.
7. 박관숙, “행정협정과 외국군대의 지위”, 『법정』, 제15권 제2호, 1960. 2.
8. 배영은,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 국회사무처, 1989. 3.
9. 배영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인한 행정협정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1권 제1호, 1956. 2.
10. 성재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제2호, 1998.
11. 성채기, “방위 및 책임분담이 이론과 결정요인 연구”, 『국방논집』, 제33호, 1996.
12. 유병화, “1994. 1. 4. 개정된 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평가”, 『국제법률경영』, 통권 제6호, 1991.
13. 이근행, “지구촌 오염의 주범 미군기지”, 『환경운동』, 1995. 7.
14. 이장희,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4년 11월호.
15. 이장희, “한-미행정협정, 문제점을 진단한다”, 『국회보』, 제345호, 1995. 7.
16. 이장희,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상 형사관할권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2호, 1996. 12.
17. 이장희, “작전지휘권환수에 필요한 국제법적 대비”, 『월간 말』, 1996년 2월호.
18. 이장희, “지켜지지 않는 용산기지 이전합의”, 『지방 자치』, 1996년 10월호.

19. 이장희, “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SOFA의 시설과 기지조항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2호, 1996. 12.
20. 이장희, “한미안보협력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통일 한국』, 1998년 4월호, 평화문제연구소.
21. 이장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의 국제법적 근거와 그 적절성”,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2호, 1998.
22.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방향”, 『국회보』, 2000년 5월호.
23. 이장희, “한미행정협정의 [형사관할권 및 시설·구역]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2000년 6월호, 대한변호사협회.
24. 임재홍,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와 개정방향”,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공청회 자료집, 1994. 10. 5.
25. 장기봉, “외국영역에 체류하고 있는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비교”, 『국제법학회논총』, 제6권 제2호, 1961. 10.
26. 장주영, “민사청구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서울국제법 연구』, 제5권 제2호, 1998.
27. 지정일, “외국군 주둔과 국제법”,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시리즈 95-2,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95. 6.
28. 최승환,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에 관한 개정방향”,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공청회자료집,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4. 10. 5.
29. 최승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2호, 1997.
30. 최승환,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공청회자료집,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8. 7. 1.
31. 한이봉,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방향”,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공청회자료집,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4. 10. 5.

III. 관련 인터넷 사이트

1. 국가기관

국방부 - www.mnd.go.kr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법무부 - www.moj.go.kr
대검찰청 - www.sppo.go.kr
출입국 관리국 - www.mojj.go.kr
노동부 - www.molab.go.kr
재정경제부 - www.mofe.go.kr
관세청 - www.customs.go.kr
청와대 - www.cwd.go.kr
주한미국대사관 - www.usia.gov
미국무부 - www.state.gov
대한민국 육군 - www.army.go.kr

2. 각종 시민단체

녹색연합 - www.greenkorea.org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www.usacrime.or.kr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 sofa.jinbo.net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 www.onekorea.net
고 조중필씨 홈페이지 - www.joongpil.or.kr
환경운동연합 - www.kfem.or.kr



의정백서04-외교정책

SOFA 백서

SOFA, 한미불평등의 증서/문제점과 개정방향

2000. 11. 2
피넛이/김원웅
피넛곶/사회정책연구소
전화 788-2383

이 「SOFA백서」가 SOFA 전면개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합니다.